

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2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과 전담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일치시키고,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미충족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·지원 근거 구체화(안 제5조제1항제8호)”

- 1) 현행 조례는 “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- 2) “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”으로 구체화함
- 3) 기존 서비스로 지원하기 어려운 새로운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돌봄 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나. “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(안 제11조, 제12조 및 제12조의2)”

- 1) 현행 조례에는 통합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, 의결정족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전문기관의 당연직 위원을 특정 기관명으로

규정하고 있어 제도 또는 기관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다양한 주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- 2) 통합지원협의체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됨을 명확히 하고, 특정 기관명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전문기관의 하남시 지역 담당 지사장으로 정비하며, 지역사회 관련 단체·조직의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범위를 확대함. 아울러 통합돌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규정하고, 정기회의 개최 횟수, 임시회의 소집요건 및 회의의 개의·의결정족수를 신설함.
- 3) 협의체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참여기반을 보완함으로써, 민·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협의체 운영의 대표성·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: 의견 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

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쇠”를 “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쇠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”을 “하남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”을 “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공공 기반 시설”을 “공공기반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 보건의료계획”을 “지역보건의료계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” 을 “분야 지원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지원” 을 각각 “지원사업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
개발 및 지원사업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에 따라” 를 “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” 로,
“지원계획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” 를 “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
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뢰받” 을 “의
뢰를 받” 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
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통합지원 회의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통합지원 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,
통합지원 관련기관,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하남시 지역 업무
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건강, 주거,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통합지원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 중 “하남시민” 을 “시민” 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통합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)” 를 “(통합지원 전담
조직 등의 설치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본청” 을 “법 제21조에

따라 본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담 조직”을 “전담조직”으로, “법 제21조의”를 “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 사업”을 “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합지원업무 담당국장, 보건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”을 “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, 보건소장”으로, “미사보건센터장”을 “미사보건센터장, 전문기관의 하남시 지역 담당 지사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돌봄 지원”을 각각 “통합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돌봄 통합지원”을 “통합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성원

5. 주민자치 관련 단체·조직의 구성원

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협의체의 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

장이 된다.

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통합지원협의체”를 “협의체”로 한다.

제16조 후단 중 “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규정을”을 “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임 애 경
	팀장 직위 · 성명	통합돌봄팀장 김 혜 언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양 소 이 (031-5182-165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노쇠</u> 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하남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<u>노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</u> 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다음과</u> ----- -----.
1. “통합지원”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<u>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 돌봄,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하남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통합지원 대상자”란 <u>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</u> .	3. ----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 ----- <u>하남시에 주</u>

가.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
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
사람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
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
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
사람

다. 그 밖에 하남시장(이하
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
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
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
람

제4조(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①
(생략)

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

1. ~ 3. (생략)

4.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
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
방안

5. ~ 7.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
획 수립 시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을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4조(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공공기반시설-

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
계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
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
한 법률」 제35조의 지역사회보
장계획,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
의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
여야 한다.

제5조(통합지원 사업추진) ① 시
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
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
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
수 있다.

1. 방문 진료·간호 등 재가 보
건의료 지원
2. 노인성 질병, 만성질환, 장애,
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
방 지원
3.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
일상생활 돌봄 지원
4. 퇴원자·퇴소자에 대한 지역
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·건강
관리 지원
5.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
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
육 등 지원
6.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

-- 지역보건의료계획-----
-----.

제5조(통합지원 사업추진) ① ---

-----.

1. -----
---- 분야 지원사업
2. -----

-- 지원사업
3. -----
----- 지원사업
4. -----

-- 지원사업
5. -----

--- 지원사업
6. -----

경 개선 등 지원

7. (생 략)

8.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

9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7조(통합지원 제공 등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,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8조(통합지원회의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,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한 통합지원회의에서 통합지원

----- 지원사업

7. (현행과 같음)

8.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

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통합지원 제공 등) ① -----
---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

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
각종 돌봄 서비스를 -----

-----.

② ----- 의뢰를 받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통합지원회의)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설치·운영
한다.

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 시장은 하남시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통합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본청 내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법 제14조까지의 업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,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하남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건강, 주거,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통합지원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 -----
-- 시민-----

제10조(통합지원 전담조직 등의 설치) ① ----- 법 제21조에 따라 본청 -----

-----.

② ----- 전담조직-----

무,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
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
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업무를 수행한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장
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
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
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
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
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 략)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
(생 략)

②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
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
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
담당국장, 보건소장, 국민건강
보험공단 하남지사장, 복지정책
과장, 노인장애인복지과장, 보
건정책과장, 건강증진과장, 미
사보건센터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

--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
당하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-----
--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
사업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호선(互選)한다.

③ ----- 통합지원 업무
를 담당하는 국장, 보건소장---

----- 미사
보건센터장, 전문기관의 하남시
지역 담당 지사장---.

④ -----

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
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
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
과하지 않아야 한다.

1. 돌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
험이 풍부한 사람

2. 돌봄 지원 관련기관의 대표
자

3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4. 그 밖에 시장이 돌봄 통합지
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사람

⑤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-----.

1. 통합지원-----

2. 통합지원 -----
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「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
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
구성원

5. 주민자치관련 단체 · 조직의
구성원

6. -----
-- 통합지원 ---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
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통합돌
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
한다.

제12조의2(협의체의 회의) ① 위
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
그 의장이 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<u>통합지원협의체의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제16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,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·판정하는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</u> 규정을 준용한다.	② <u>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.</u> ③ <u>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제1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협의체</u>----- -----. 제16조(사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</u>를 -----.
--	---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6. 3. 27.] [법률 제20445호, 2024. 9. 20., 타법개정]

제20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(전담조직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
2.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·조정,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
3.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
4. 통합지원 관련기관,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·조정
6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·면·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